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

◇ 제정 이유

중앙과 지방의 소방기관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정책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"119 현장자문단"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◇ 주요내용

가. 119현장자문단의 기능과 구성 요건에 관한 사항(안 제2조, 제3조)

나. 단원의 임기와 해임할 수 있는 경우(안 제4조, 제5조)

다. 회의의 운영 방법과 분과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, 제7조)

라. 수당 및 포상 등 기타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(안 제8조, 제9조, 제10조)